노사협의회규정

제 정 2007. 10. 31 개 정(1) 2009. 10. 14 개 정(2) 2016. 5. 26 개 정(3) 2019. 2. 18 개 정(4) 2020. 9. 29 개 정(5) 2023. 10. 18

한국투자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 로써 공정한 노사관계를 확립하여 노사쌍방에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여 서로 협력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기업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 로환경의 유지 개선을 기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이 노사협의회는 한국투자공사노사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신의성실의 의무) 이 협의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항상 신의성실로 운영되어야 하며 협의사항은 노사 쌍방에 의하여 최선의 노력과 협력으로서 성실히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.

제2장 조직

제4조(구성)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

- 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.
- ②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위원은 부문 및 성별 근로자 비중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선출하다.
-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장, 인사담당부문장, 인사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사장은 기획담당부서장, 연수담당부서장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.
- 제5조(위원의 신분) ①협의회의 위원은 비상임, 무보수로 한다.
 - ②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③사용자는 협의회 참석시간 및 그 준비를 위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.
- 제6조(위원의 자격) 협의회 위원은 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야 한다.
 - 1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2. 근로자 위원의 경우 공사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
- 제7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 - ②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최초 구성 시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후임위원은 전임위원의 임기 만료일 익일부터 기산 한다.
 - ③후임위원은 전임위원의 임기만료일 14일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.
 - ④전임위원의 중도 사임 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8조(전문위원회 설치)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 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한다.

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

- 제9조(선거관리위원회 구성) ①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선관위"라 한다)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.

- 제10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)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선거 및 일정공고
 - 2.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
 - 3.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
- 제11조(선거관리위원 선출)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제12조(선거일)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.
- 제13조(후보 등록)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근로자여야 하며,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.
- 제14조(근로자위원 선출) ①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 - ②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.
 - ③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,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.
- 제15조(보궐선거) ①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 - ②제①항에 불구하고 제 14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·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.

제4장 회의

- 제16조(회의개최 및 소집통보) ①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 시에는 임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.
 - ②정기협의회는 회의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.
 - ③임시협의회는 노사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요청으로써 개최하며 회의 개최 3일

전에 안건과 함께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한다.

제17조(회의의 성립 및 의결)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8조(회의의 사회) 회의는 노사 쌍방에서 선임하는 대표가 교대로 주재한다.

제19조(의장)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이 경우 근로자위 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.

제20조(가사)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.

제21조(보고사항)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, 설명하여야 한다.

- 1.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
- 2. 분기별 사업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
- 3.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
- 4. 기업의 경제적·재정적 상황
-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, 설명할 수 있다.
-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·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 로자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22조(혐의사항) ①혐의회가 혐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
- 2. 근로자의 채용·배치 및 교육훈련
- 3. 근로자의 고충처리
- 4. 안전·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
- 5. 인사·노무관리의 제도개선
- 6.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·재훈련·해고등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
- 7.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
- 8.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등의 제도개선
- 9. 신기술 도입 및 업무절차 등의 개선

- 10.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
- 11. 종업원지주제(從業員持株制)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
- 12.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
- 13. 근로자의 복지증진
- 14.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
- 15.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
- 16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직 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
- 17.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
- ②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.

제23조(의결사항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
- 2.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
- 3.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
- 4.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
- 5.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
- 제24조(출석 및 위원 외 출석) ①협의회 소집통보를 받은 각 위원은 반드시 본인 이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다.
 - ②협의회는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외의 인사의 출석을 구하여 그의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25조(비밀유지)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26조(임의중재) ①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1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.
 - 1.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
 - 2.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
 - ③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

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- 제27조(기록보존) 협의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노사 양측이 각 1통씩 보관한다. 단, 사내 그룹웨어 게시 등 사내 공개를 통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- 제28조(재협의 금지) 노사 쌍방은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년도 내에 동일 사항의 재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.

제29조(경비)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.

제5장 고충처리

- 제30조(고충처리위원회 설치) ①협의회는 분쟁의 사전예방과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케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협의회 내에 설치한다.
 - ②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 각 2인으로 한다.
- 제31조(고충처리에 관한 사항)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.
 - 1. 모집과 채용, 임금 및 이외의 금품, 교육, 배치 및 승진, 정년. 퇴직 및 해고 와 관련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
 - 2.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활동과 발생시 조치
 - 3.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
 - 4. 기타 직원 고충에 관한 사항
 - ②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상 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.
 - ④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한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은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. **제2조(시행)** 이 규정은 2007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제12조(선거일)은 근로자위원에 대한 최초의 선거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4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5월 27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25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